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

류지영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Ji-Young Ryu

Director of EIA in Ministry of Environment

I. 서 론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속한 공업화, 인구의 증가 및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환경은 일단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 복구에 상당한 경제적 비용 및 시간 등을 요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사후관리적 수단에서 점차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관리적 수단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전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이라 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개발사업계획의 결정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게 되자, 경제성, 기술성 외에 환경보전을 주요 인자로 하여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생성되게 되었다.

1969년 미국은 국가환경정책법(NEPA) 제102조에 “인간 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안 기타 주요한 연방행위(Action)에 대한 제안서에는 제안된 행위의 환경영향, 피할 수 없는 환경영향, 대안, 원상회복 및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이용 등에 관한 책임있는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상세한 서류(Statement)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7년 환경영보전법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이래 수차례의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거쳐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II.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개발사업은 크건 작던 사업시행에 따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절대적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모든 개발사업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타 법령에 의하여 환경성이 검토되는 등 그 실익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바, 일반적인 평가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콜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 둘째)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대상사업	대상사업의 범위
가. 도시개발(1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구획정리, 아파트지구개발, 대지조성,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일단의 주택지 또는 시가지조성, 학교 : 30만m² ◦ 유통단지, 공동집배송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 터미널 : 20만m² ◦ 기타 : 아파트지구개발(25만m²),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주차장(20만m²)], 시장(15만m²), 운하], 하수종말처리시설(10만m³/일)
나. 산업입지(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중소기업단지,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15만m²
다. 에너지개발(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개발, 전기설비: 발전소(1만kW, 댐 및 저수지 수반시 3천kW, 공장용지내 3만kW, 태양력 등 10만kW), 송전선로(345kV, 10km), 옥외변전소(765kV), 저탄장(5만m³), 회처리장(30만m³) ◦ 광업(30만m³), 해저광업, 송유관시설중 저유시설, 석유사업자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저유시설(10만㎘이상)
라. 항만건설(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시설 : 외곽(300m, 매립 1만m³), 계류(매립 1만m³), 기타(15만m³, 매립수반시 3만m³) ◦ 항만(신항만)시설 : 외곽(300m, 매립 1만m³), 기능(매립 1만m³), 기타(15만m³, 매립수반시 3만m³) ◦ 항만준설 : 10만m³, 20만m³(항로등 유지준설, 오염물질제거시 제외)
마. 도로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신설도로 4km(도시계획구역은 폭 25m, 개발제한구역 3만m² 포함), 확장의 경우10km(2차선이상)]
바. 수자원개발(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또는 하구연, 저수지, 보 또는 유지 : 200만m³, 2,000만m³이상
사. 철도건설(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 도시철도 · 고속철도(1km), 삭도 · 케도(2km)
아. 공항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개발 : 비행장, 활주로(500m), 기타(20만m³)
자. 하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공사 : 10km
차. 매립 · 개간(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 : 30만m³(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3만m³) ◦ 개간(간척 포함) : 100만m³
카. 관광단지(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온천 : 30만m² ◦ 기타 : 도시공원(25만m²), 유원지(시설면적 10만m²)
타. 체육시설(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수련지구 : 30만m² ◦ 경정 · 경륜시설, 경마장 : 25만m²(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포함)
파. 산지개발(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지(25만m²), 초지(30만m²), 기타(20만m²)
하. 특정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파. 및 더의 사업
거. 폐기물 · 분뇨처리시설(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처리시설(100㎘/일,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사는 제외) ◦ 매립시설(30만m³, 330만m³ 다만 지정폐기물의 경우 5만m³, 25만m³), 소각시설 또는 고온열분해시설(100t/일)
너. 국방 · 군사시설(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 군사시설(33만m²), 군용항공기지[비행장, 활주로(500m), 기타(20만m²)], 해군기지(10만m², 다만 매립수반시 3만m²)
더. 토석등 채취(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및 연안구역(상수원보호구역내 2만m³, 상류 5km내 5만m³), 산림(10만m³), 해안규사(강원 · 경북 2만m³, 기타 3만m³), 해안모래(25만m³, 100만m³)

※ '97. 9. 8.부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업임.

셋째) 매립사업, 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넷째) 택지·공단조성 등 대기·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은 Positive List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 자치단체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의 17개 분야 6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III.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 관리 실태

1. 환경영향평가 협의

각종 개발사업실시전에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예측 및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공포하고, 지역주민과 시·도 등의 의견도 수렴해 환경오염방지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보전과 자연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총 1,723건이며, '96 ~'97년도는 각각 151건씩 협의하여 개발수요는 안정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된 실적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건설 및 에너지개발 31.6%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는 도시화에 따른 주택난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18.6%이고, 산업단지조성 13.1%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개발 및 국민소득향상과 관련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평가제도가 도입 시행된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평가서의 부실작성, 평가서검토의 미흡, 협의내용의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국회,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사업자는 스스로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평가대행자에 의뢰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동 평가서의 내용이 사업시행에 유리하도록 작성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저하 우려될 수 있다.

평가서 작성시 한국적 실정에 맞는 평가기법과 축척된 정보·자료의 부족등으로 평가의 정확성 및 내실화 저하될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미흡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위원, 주민추천전문가 등에 의견을 듣고 있으나 책임성 문제와 검토 수당 및

표 2. 연도별 평가협의 실적

년도	총 계	'82~'92	'93	'94	'95	'96	'97
건 수	1,723	996	149	115	161	151	151

표 3. 사업유형별 실적

구 분	도시 개발	공단조성	에너지개발	도로건설	환경기초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기 타
1,723건 (100%)	320 (18.6)	225 (13.1)	308 (17.9)	236 (13.7)	131 (7.6)	126 (7.3)	118 (6.8)	259 (15.0)

시간 부족등으로 400-500 쪽에 달하는 평가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검토 애로가 있다.

- 토사유출 방지대책 미흡(가배수로, 침사지등)
-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또는 비정상가동
- 발파시 소음·진동 저감 및 안전대책 미수립 등

2. 협의내용 관리

'9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된 개발사업중 497개 개발을 사업승인기관등에서 점검한 결과 48.9%인 243개 사업장이 미이행하고 있었으며, 주요미이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내용 미이행

- 사업계획변경시 재협의전 사전공사- 협의내용관리대장 미비치, 관리책임자 미지정 등
- 사업착공 및 공사중단시 통보 미이행

2) 공사전 필요한 환경영향저감대책 미이행

- 식생이 양호한 수목, 녹지면적확보 미흡
- 보호수 체손방지대책 미수립 및 수립대 조경계획설계 미반영

3) 공사시 관리 미흡으로 협의내용 미이행

- 토취장, 절·성토법면 안정화처리, 낙석방지를 위한 방호체 미설치

4) 운영시 관리 미흡으로 협의내용 미이행

- 골프장 우수저류조 용량부족
- 하수처리시설 운영전 오수대책 미흡
- 폐기물매립장 미확보, 악취저감대책 미흡등

IV.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내용

'93. 6. 11. 환경영향평가법제정이후 그 동안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97년도에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확대·실시

- 지자체 실시등으로 환경영향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행 평가대상사업의 범위가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 특성상 환경영향이 큰 사업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이에 따라 각 시·도는 법령상의 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표 4. '97년도말 협의내용 점검실태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조사 확인 사업장수	339	448	594	243	311	408	497
미이행 사업장수	251	295	345	135	151	202	243
미이행률 (%)	74.0	65.8	58.1	55.6	48.6	49.5	48.9
조치	이행촉구	251	295	345	135	151	202
	공사일시 중지요청	6	3	1	2	5	16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계열회사의 평가대행 금지

- 사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평가서작성 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계열회사일 경우 평가서 내용이 사업자의 의도대로 작성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사업자와 계열회사인 평가대행자간 평가서작성을 금지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3) 평가대행실적 등의 공고

- 평가대행자는 사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평가서의 내실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동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 부족으로 평가서의 부실작성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행정처분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이 매년 3. 30.까지 공고하도록 함.

4) 협의완료후 일정기간내 사업미착공시 재협의를 받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 이후 장기간 사업 미착공으로 주변환경현황이 크게 변화된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 평가협의 완료후 5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평가서의 재협의대상에 포함시킴.
(다만, 사업의 미착공기간내에 주변환경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치 경우는 제외)

5) 재협의 대상이 아닌 협의내용의 변경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대

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시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동 저감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승인등에 반영하도록 함.(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필요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승인기관의 환경보전의식 및 전문성 부족으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협의 내용의 변경시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변경됨으로써 환경훼손이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내용의 변경시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6) 환경영향재평가의 실시

- 환경영향평가란 현재의 기술, 정보하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변화상태를 예측·분석 및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초에 예측못한 중대한 환경영향이 발생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사업승인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의한 경우 포함)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여금 환경영향재평리를 실시도록 함

7)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징수

- 협의내용중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등이 우선 적용되게 되어 미이행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된 오염물질 배출농도기준을 초과하여 각종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

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립

-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환경영향재평가의 실시,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기존 환경부 연구조직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함

9) 허위 평가서에 대한 벌칙 부과

-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함

10)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 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 공사착공 등의 통보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1) 평가대상사업의 조정

- 신규사업의 시행외에 기존사업의 확장(15%이상) 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타 법령에 의하여 의제처리되는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명문화 함
- 평가대상사업의 추가
 - 신항만건설, 고속철도건설(1km이상), 석유사업법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저유시설(10만㎘이상)

12)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조정

-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대상사업규모를 체육시설 설치등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청소년수련지구(토지형 질변경면적 또는 시설면적 → 총용지면적)
 - 산지개발(35만㎡이상 → 20만㎡이상)
- 환경영향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평가의 실익이 적은 일부사업의 규모 축소
 - 변전소(발전용량 345KV → 발전용량 765KV)
 -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신설(폭 25m이상 → 폭

25m이상으로서 녹지지역이 3만제곱미터이상 포함되는 경우)

- 어선보호 등을 위하여 소규모 어항(외곽시설)의 평가대상규모완화
 - 어항 및 항만 외곽시설(규모없음→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매립 1만㎡이상)
-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분뇨를 유입처리하는 분뇨 처리시설의 평가제외

13) 주민의견수렴기간의 실질화

- 평가서초안 공람기간(30일이상-50일이내)에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아 충실한 주민의견수렴 도모

14) 변경신청기간 현실화

- 평가대행자 소속기술인력의 퇴직 및 신규채용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술인력 변경신청기한을 종전 15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15) 과태료 부과요건 규정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통보
 - 사업만료일부터 30일이내(조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익년 1월말까지 보고)
- 사업착공 등의 통보
 - 사유발생일부터 10일이내

16) 측정대행자의 요건 명확화

- 측정대행자의 자격요건을 환경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서 수질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명문화

V. 향후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향

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비용부담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그리고 평가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98

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 등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통합

환경영향평가제도는 '81년도 도입되어 교통·재해·인구 등의 전체를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왔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교통난 해소 및 수도권 인구분산 등을 목적으로 교통 및 인구 영향 평가를 '87년도에 도입하여 교통체계 개선등 세부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에 따른 대규모개발은 유출을 증가시키고 하천의 정상적인 통수능력을 초과하여 홍수발생 가능성을 증대시켜 재해의 위험도 높아 이를 해소키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재해영향평가를 '96년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4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창구의 다원화, 평가비용의 중복, 협의기간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불편을 주고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각종 영향 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함에 따른 과도한 비용 부담
 - 택지개발사업(30만평)의 경우 환경 1억 1천만 원, 교통 1억원, 재해 8천만원, 인구 4천만원 소요
 - 환경·재해·경관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에 전당 6~7백만원 소요
- 어느 하나의 영향평가라도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승인 불가로 사업 지체
 - 환경·교통영향평가에 6개월~1년이 소요되고(일부 병행추진 가능), 인구영향평가는 환경·교통영향평가결과를 첨부하여 반기별 심의상정

환경부에서는 '98년도 상반기까지 행정자치, 건설

교통부 등과의 대상사업범위, 주민의견수렴, 통합평가서 작성등 절차통합을 우선적으로 협의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을 분석한후 2000년까지 제도통합을 추진토록 할 것이다.

2. 각종 개발사업 등의 기본계획단계에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란 아직 승인되기전의 제안된 정책(Policy), 계획(Plan) 혹은 프로그램(Program) (PPPs 또는 3Ps로 불림)들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Process of Evaluation)으로 정의되어 질 수 있으며, 정책환경평가 혹은 대안적인 프로그램환경평가(Programmatic Environmental Assessment, PEA)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져 오고 있다.

전략환경평가는 계획과정의 초기단계에서 환경적 이슈들의 고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리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들의 수립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종합건설계획,

도시기본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에 대해서도 동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평가제도의 한단계 도약이 필요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무시된 대안의 고려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들의 적절한 부지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잠재적인 환경문제들을 예측하고 규명하여 장기적인 환경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한다.
- 누적영향, 간접영향, 합성영향, 자연되어 나타나는 영향, 지역적으로 이동되어 나타나는 영향 혹은 지구적 영향들의 보다 효과적인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 이슈의 규명, 기초연구의 시작, 초기단계에서

의 자료수집등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 특정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책들의 환경적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기법 개발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이후 대기, 수질, 소음, 해양등 생활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사업으로 기법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사회·경제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도외시 되어 왔다. 따라서 환경영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98년도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여금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평가기법개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보급토록 할 것이다.

또한,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의 연구소에서 자체사업에 맞는 기법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98년도부터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상호협의하여 국가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4.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정보 체계구축

'82년도부터 1,723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하였으나, 사업유형 및 사업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모델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모델을 적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비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적용하는 모델이 달라 평가서검토에 애로가 많고, 또한 이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예측모델의 부적정으로 인한 부실평가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유형, 사업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적용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알맞는 적용 모델을 연구하여 환경영

향평가의 질적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82년도부터 각 개발사업에 적용된 모델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시 사업유형, 사업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올바른 적용모델을 유형화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5.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제도 정착을 위한 각종지침 제정

1) 환경영향재평가 지침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협의 당시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은 재평가를 실시토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항목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2)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비용 계산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도로건설사업등 공공사업의 경우 공사시공 중에 설치·운영하도록 협의된 환경영향저감시설(오수처리시설·방진망·세륜세차시설등)이 많으며, 실제로는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확정후 공사비내역서에 빠져있는 환경영향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비 내역서 작성시 「총 공사비의 일정비율」 또는 「공사의 종별·규모별 일정금액」을 환경영향비로 계상하였다가 사후정산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환경영향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1995. 11. 9.재정경제원 회계예규 22000.04-105-1)제10조 제19호 및 제21호에 막연히 「폐기물처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수 있는 근거만 둔 채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집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비등 계상을 공사시행자에게 맡겨둠으로써 공사시행자는 과거 관행대로 공사비에 반영한 소액의 환경보전비등 범위내에서 협의된 저감시설의 일부만 예산으로 설치한 후 대부분의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사중 추가 소요되는 오염시설은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협의내용이 미흡하므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관리비 계산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II. 결 론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난 '97년도 환경영향평

가법령 개정에 반영된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립,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도입, 시·도 조례에 의한 지역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영향재평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되나,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우리실정에 맞는 평가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 각종 지침의 제정 및 환경관리비용의 계산 기준 등 향후에도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이 도입 또는 보완하여야 할 과제가 산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되도록 위상정립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적극 유도하여 괘적한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할 것이다.